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4333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500호)	박홍배	2024. 6. 1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940호)	임이자	2024. 6. 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4. 9.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4. 9. 12.)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되, 긴급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 2제4항).

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제49조제5항 신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 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 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저 공해운행지역을 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한다.

⑤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
	<u>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u>
	<u>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u>
	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
	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
	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
	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
	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
	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
	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
	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
	<u>차</u>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

역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 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 거나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 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 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 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저 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 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그 밖 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 이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 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 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과태료) ① ~ ④ (생 제49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략)

/ 入]	서〉
$\sim \sim 1$	一つ シー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환경부</u>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u>(5)</u>	저]29조	의2제]1형	 을	위	반히	-역
저-	공	해운형	행지역	에거	너 .	운현	행할	수
없.	는	자동	·차를	운	. 행 :	한	자여	기게
는	10)만원	이히	의	과	태호	료를	 부
과	— 한 [구.						
<u>(6)</u>	_	 		제5	핫_			

<u>6</u>		<u>5항</u>	
			·- <u>환경부</u>
<u> 장관,</u>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u>수</u>			